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2022. 2.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5
1. 재난	6
① 자연재난	6
② 사회재난	8
2. 안전사고	10
① 대학 안전사고	1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3
③ 연구실사고	15
3. 감염병 확산	17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7
4. 범죄	21
① 일반범죄	21
② 성범죄	23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27
① 산업재해	27
② 중대재해	31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35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38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43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4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45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2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아래 예시 서식 및 참고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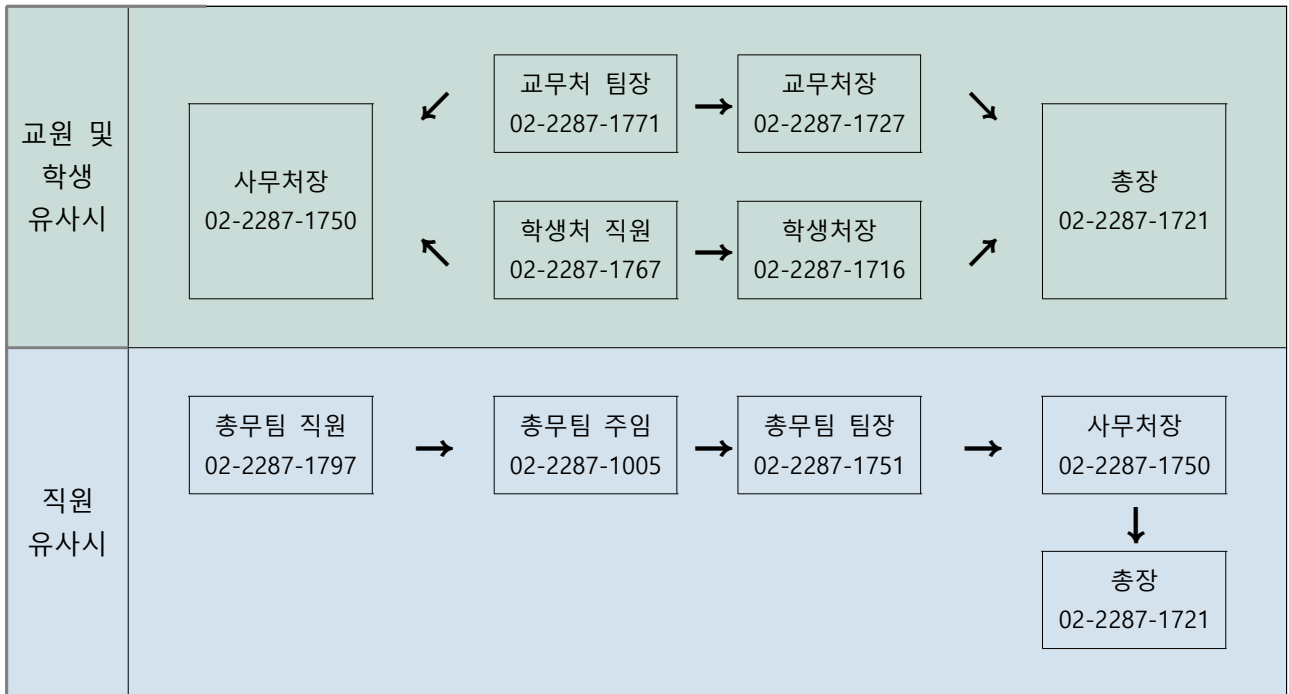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처	
1. 재난	자연재난	사무처	학생처
	사회재난	사무처	학생처
2. 안전 사고	대학안전 사고	사무처	
	연구실 사고	사무처	각 실습실 조교
	교육시설 안전	사무처	
3. 감염병	코로나 19	사무처	
4. 범죄	성범죄	학생처	사무처
	일반범죄	사무처	학생처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처	
	중대재해처벌법	사무처	
6. 기타	비상사태	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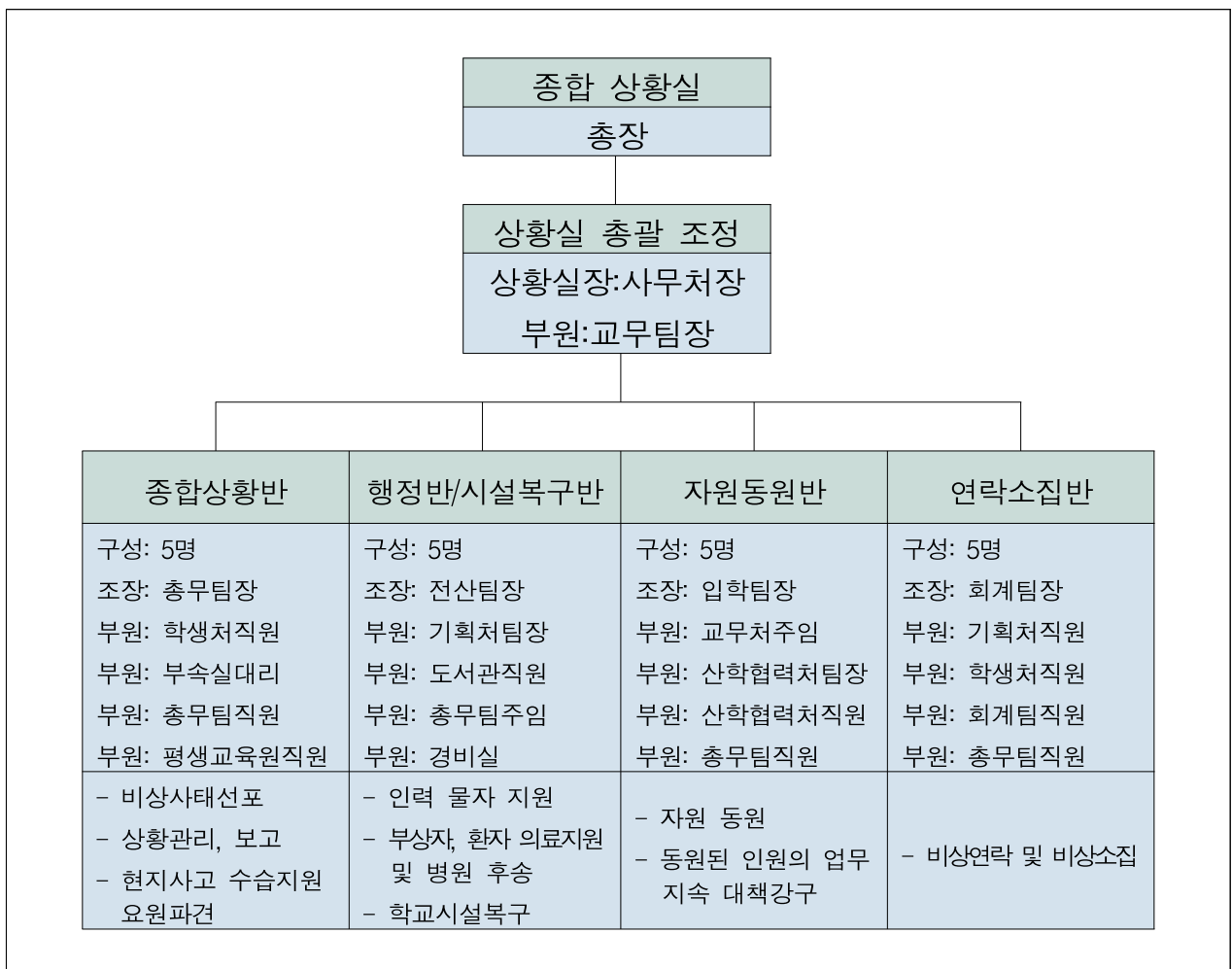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 책	연 락 처
		사무실
대학본부	총장	02-2287-1721
사무처	사무처장	02-2287-1750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사무처	총무팀 주임	02-2287-1005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018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학생처	직원	02-2287-1767

비상연락망 구축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직원	학생처	학생처 직원	02-2287-1767	협조부서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 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상황 공유 및 주의사항 전파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2~제33조의3) 관련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재난안전관리사업	0	0	0	0	
계	0	0	0	0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직원	학생처	학생처 직원	02-2287-1767	협조부서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관련 매뉴얼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관련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관련 매뉴얼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사회재난안전관리사업	1.4	1.4	2.1	3.9	
계	1.4	1.4	2.1	3.9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 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 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 관련 매뉴얼 : 대학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2022 예정)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 관련 매뉴얼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① 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관련 매뉴얼 : 대학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2022 예정)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0)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대 학 안전 관리 사업	2.4	2.4	4.1	8.9	
계	2.4	2.4	4.1	8.9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 관 부 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작성요령(교육부, 2021)
교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안전·유지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예정)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교육시설 안전 관리사업	15.5	20.7	17	53.2	
계	15.5	20.7	17	53.2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팀장	사무처	팀장	02-2287-1751	주 관부서
직원	사무처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직원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정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관련 매뉴얼 :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연구실안전관리사업	6.868	4.85	4.35	16.068	
계	6.868	4.85	4.35	16.068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처장	사무처	사무처장	02-2287-1750	주 관 부 서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임	사무처	총무팀 주임	02-2287-1005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018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 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감염자 수	0	0	0	0	0	0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 관련 매뉴얼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교내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시 교내 조치사항 >

- ①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일시적 조치를 하고, 역학조사 진행에 협조
- ② 감염병 발생감시팀장은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확진환자의 캠퍼스 내 동선을 파악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보고
- ③ 총괄관리자는 위 상황을 감염병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실시
- ④ 감염병관리위원장은 동선상 건물을 폐쇄 조치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향후 대책(안) 마련
- ⑤ 발생감시팀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건강상태, 확진검사 유무 및 결과 등) 관리
- ⑥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⑦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⑧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⑨ 총장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
- ⑩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증상 확인 시 ① 콜센터(☎1339),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 ⑪ 관할 보건소 연계 통해 대학에서 추진할 조치사항을 지원*하고,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 ⑫ 교내 소독 강화 및 발생상황 모니터링
- ⑬ 등교중지, 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등에 대한 대책(온라인학습 등) 지원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관련 매뉴얼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서울여자간호대학교, 2021)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강염병예방사업	0	4	4	8	
계	0	4	4	8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주임	02-2287-1005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학생처	학생처 직원	02-2287-1767	협조부서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경비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관련 매뉴얼 :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당직근무와 경비체계 확립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사고 조사
 - 사고의 성격에 따라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관리에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사고 종결
 - 사고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진행 중인 조사나 검토의 완료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범죄예방사업	7.92	7.92	7.92	23.76	
계	7.92	7.92	7.92	23.76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학생처장	학생처	센터장	02-2287-1716	주 관부서
상담사	학생지도상담센터	상담사	02-2287-1019	
직원	학생처	직원	02-2287-1767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협조부서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0	0	0	0	0	0
	성폭력	0	0	0	0	0	0
	계	0	0	0	0	0	0
피해자 수	성희롱	0	0	0	0	0	0
	성폭력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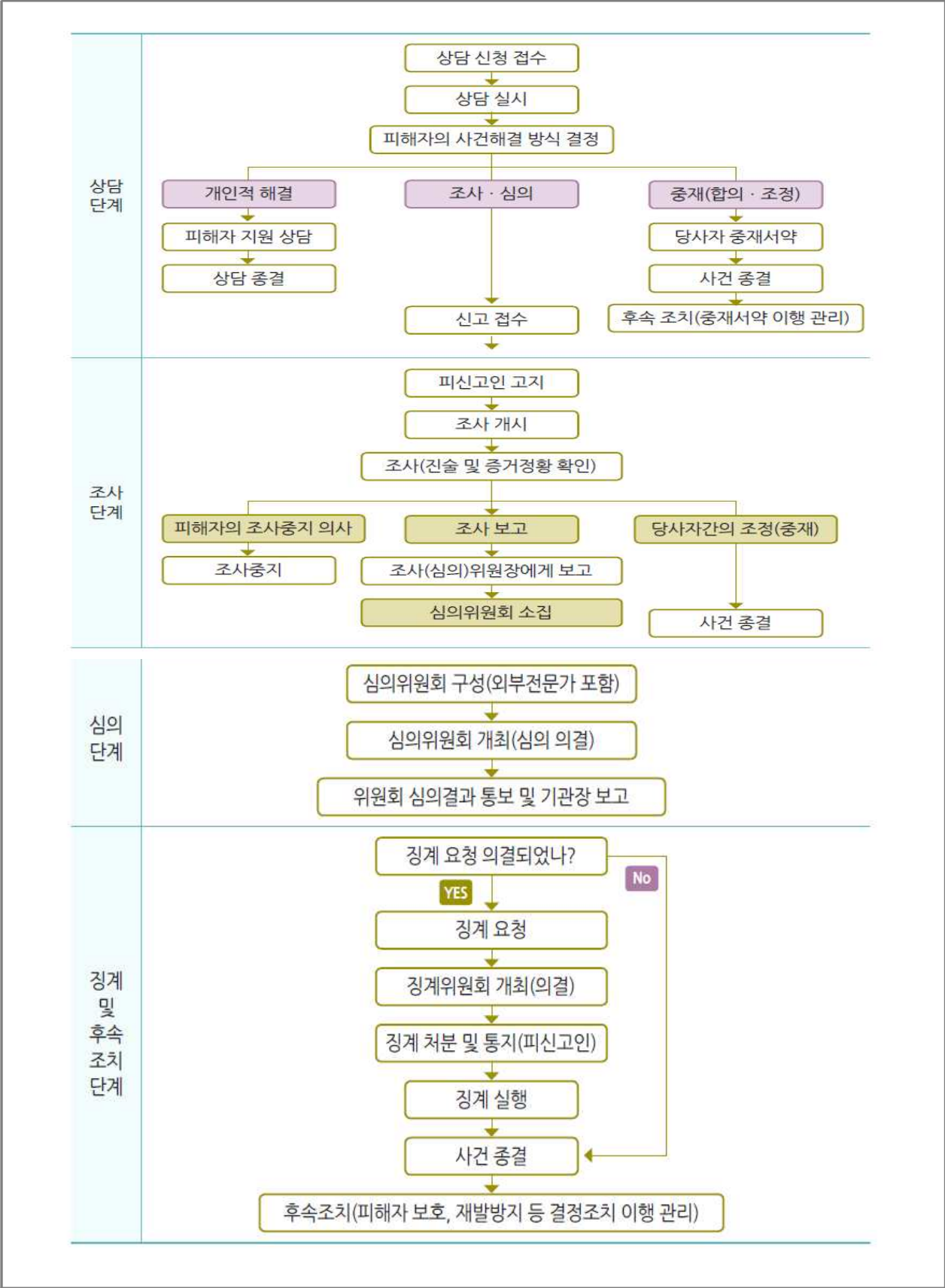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교육)**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해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관련 매뉴얼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2022)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참고 자료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등의 방법으로 만나는 과정이다.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O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O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사건개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폭력에 방 교육	1.2	1.2	1.2	3.6	
성고충상담실 운영	0.2	0.2	0.2	0.6	
계	1.4	1.4	1.4	4.2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총장	대 학 본 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2-2287-1721	주 관 부 서
직원	사 무 처	안전 관리자	02-2287-1797	
소장	지역간호 사업소	보건 관리자	02-2287-1782	
직원	사 무 처	관리감독자	02-2287-1797	
조교	지역간호 사업소	산업보건의	02-2287-1782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 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 관련 매뉴얼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사고 조사

- 사고의 성격에 따라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관리에 있어 효과를 조사, 사고 원인을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사고 종결

- 사고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진행 중인 조사나 검토의 완료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업무 참조

주체		주요 업무	
사업주 (장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총장, 특수학교장, 소속기관장)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 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사업재해 안전사업	0	0	2.1	2.1	
계	0	0	2.1	2.1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총장	대학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2-2287-1721	주 관 부 서
직원	사무처	안전 관리자	02-2287-1797	
소장	지역간호 사업소	보건 관리자	02-2287-1782	
직원	사무처	관리감독자	02-2287-1797	
조교	지역간호 사업소	산업보건의	02-2287-1782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관련 매뉴얼 : 2022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2)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사고 조사

- 사고의 성격에 따라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관리에 있어 효과를 조사, 사고 원인을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사고 종결

- 사고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진행 중인 조사나 검토의 완료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중대재해예방사업	0	0	2.1	2.1	
계	0	0	2.1	2.1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대 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 품 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 험 료 (A)	학 생 수 (B)	연 간 총 보 험 료 (C)	보험(공제)청구				비 고
						인 적		물 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21	영업배 상책임 보험(공제)	2021-03-04 2022-03-04	0.768	950	729.6	0	0	0	0	
2022	영업배 상책임 보험(공제)	2022-03-01 2023-02-28	0.751	950	713.6	0	0	0	0	

□ 보상한도

담 보 대 상	보 상 구 분	보 상 한 도 액 (천 원)		비 고
		1인당	1사고당	
배 상 책 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 인	100,000	500,000	공제금 사고당 10만원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대학화재 보험(공제)	2020-12-11 2021-12-11	1,486.6	-	1,486.6					
2022	대학화재 보험(공제)	2021-12-11 2022-12-11	1,908.6	-	1,908.6					

□ 보상한도

가입대상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본관 및 제1강의관	특수건물풍수재담보	KRW	2,543,360,000
	화재(특수건물)대물배상책임담보	KRW	법정 한도(사고당 최대 10억)
	신체손해배상책임	KRW	법정 한도(인당 최대 1.5억)
	구내폭발파열위험	KRW	2,543,360,000
건물수용_집기비품	화재	KRW	2,543,360,000
	구내폭발파열위험	KRW	142,219,000
	화재	KRW	142,219,000
전기기기및시설	특수건물풍수재담보	KRW	2,250,000
	신체손해배상책임	KRW	법정 한도(인당 최대 1.5억)
	구내폭발파열위험	KRW	2,250,000
	화재	KRW	2,250,000
제2강의관	특수건물풍수재담보	KRW	1,009,106,000
	신체손해배상책임	KRW	법정 한도(인당 최대 1.5억)
	구내폭발파열위험	KRW	1,009,106,000
	화재	KRW	1,009,106,000
건물수용_집기비품	구내폭발파열위험	KRW	112,856,000
	화재	KRW	112,856,000
제3강의관	특수건물풍수재담보	KRW	1,068,721,000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 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1-03-01 2022-02-28	0.87	950	826.5	0	0	0	0	
2022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2-03-01 2023-02-28	0.83	950	788.5	0	0	0	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 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	
장해급여	200,000	—	
요양급여	100,000	—	
장의비	10,000	—	
입원급여	50	—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방화·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2021-10-25	4H	52명	
	2021-12-31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소방교육	비대면 교육으로 교내 LMS활용으로 온라인교육 실시 (화재 발생시 상황 및 대피 교육)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2022-11-01	4H	77명	
	2022-12-31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소방교육	비대면 교육으로 교내 LMS활용으로 온라인교육 실시 (화재 발생시 상황 및 대피 교육)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팀장	사무처	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직원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미대상			
교직원	미대상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분기별 1회	3시간	75	2,1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팀장	사무처	사무처장	02-2287-1750	주 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시간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전반기	2H	229	1,400,000
정기교육훈련	전반기, 후반기	3H	1,35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 및 정기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전반기	2H	약 900	1,400,000
정기교육훈련	전반기, 후반기	3H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 및 정기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학생처장	학생처	센터장	02-2287-1716	주 관부서
상담사	학생지도상담센터	상담사	02-2287-1019	
직원	학생처	직원	02-2287-1767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협 조부서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1.11.15.~2021.12.10	2시간	306명	1,200,000
	2021.08.19	2시간	12명	
교직원	2021.11.15.~2021.12.10	4시간	121명	
	2021.08.19	2시간	4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학생 성인지, 데이트폭력 교육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교육, 대학생 성인지, 데이트폭력 교육	1회	918	1,200,000
교직원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교육	1회	121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학생 성인지, 데이트폭력 교육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지원내용	
서대문구 소방서	02-6981-5474	피해지원	
누리 FES	02-597-7119	소방시설 유지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	02-6902-4700	전기시설 안전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02-393-0795	가스설비 응급복구	
삼성화재	02-2636-6313	화재보험금 지급	
대한적십자사	02-2290-6600	생필품 지원	
동신병원	02-396-9161	응급대응기관	
중앙전기	010-5314-6611	전기시설관리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지원내용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2-2287-1751 02-2287-1797	피해상황파악	
		비상연락망전파	
		피해상황보고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학생처	학생처 직원	02-2287-1767	
	② 사회재난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학생처	학생처 직원	02-2287-1767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③ 연구실사고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처장	사무처	사무처장	02-2287-1750	주관부서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임	사무처	총무팀 주임	02-2287-1005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4. 범죄	① 일반범죄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주관부서
		직원	사무처	총무팀 주임	02-2287-1005	
		직원	사무처	총무팀 직원	02-2287-1797	
		직원	학생처	학생처 직원	02-2287-1767	
	② 성범죄	처장	학생처	센터장	02-2287-1716	주관부서
		상담사	상담센터	상담사	02-2287-1019	
		직원	학생처	직원	02-2287-1767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팀장	사무처	총무팀장	02-2287-1751	협조부서
		총장	대 학 본 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2-2287-1721	
		직원	사무처	안전 관리자	02-2287-1797	
		소장	지역간호사업소	보건 관리자	02-2287-1782	
		직원	사무처	관리 감독자	02-2287-1797	
	② 중대재해	조교	지역간호사업소	산업보건의	02-2287-1782	주관부서
		총장	대 학 본 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2-2287-1721	
		직원	사무처	안전 관리자	02-2287-1797	
		소장	지역간호사업소	보건 관리자	02-2287-1782	
		직원	사무처	관리 감독자	02-2287-1797	
		조교	지역간호사업소	산업보건의	02-2287-1782	
		조교	지역간호사업소	산업보건의	02-2287-1782	